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제2항의 내용 중,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구역에 적합한 F.D(방화댐퍼)를 설치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방화구획에 F.D가 떨어져 있는 경우 방화구획과 F.D사이의 마감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질문의 요지가 명확하지 않아 두 가지 관점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1) 방화구획벽과 F.D가 관통하는 부분의 틈새는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인정한 내화충전구조의 성능이 확인된 구조 및 재료로 밀실하게 밀폐를 하셔야 합니다.
- 2) KS F 2815(배연설비의 검사표준) 5.2.3(배연풍도)에 따르면 방화구획 벽체와 이격된 F.D 사이의 배연풍도는 1.5mm 이상의 철판으로 만들거나 또는 모르타르 등으로 피복하여 충분한 방화 성능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NFSC(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9조에 따라 배출풍도는 풍도의 크기에 따라 강판두께는 0.5~1.2mm 규정하고 있으며, 1.5mm 이상을 만족하기 위하여 별도의 풍도를 제작하기 어려운 관계로 1.5mm 이상의 철판을 덧대어 보강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허가상의 건물용도는 교육연구시설 중 연수원으로 되어있고, 건물의 규모는 지하3층~지상4층이며 지하3층부터 지상층까지는 주차장 및 강의시설이고, 지상2층부터 지상4층까지는 연수생 객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각 층별 지하층은 평균 3,200m²이고 지상층은 1,500m²가 조금 넘습니다. 이때, 방화구획을 함에 있어 스프링클러설비가 되어 있어서 3,000m²로 면적구획을 하고자 하는데, 지상2층~4층까지 면적과 상관없이 별도로 방화구획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문의하신 객실부분의 방화구획은 「건축법시행령」 제53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른 경계벽 및 칸막이벽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경계벽 및 칸막이벽 설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3조(경계벽 및 칸막이벽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계벽 및 칸막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2013.3.23>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제2조제14호 후단에 따라 거실·침실 등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발코니 부분은 제외한다)

본 코너는 방화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한 답변은 관련 법률에 의한 공식적인 판단이 아니며,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소관부처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 간 칸막이벽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의 호실 간 칸막이벽
4.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

따라서 문의하신 교육연구시설 중 연수원은 경계벽 및 칸막이벽 설치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방화구획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당 건물의 3층 이상의 층(3, 4층) 및 지하층은 층별 방화구획 대상으로 갑종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 등으로 구획해야 하며, 수직 배관 관통부 등에 내화충전구조로 밀폐해야 합니다.

● 건축물의 반자가 불연재료로 마감되는 천장 속에 소방시설 용도 외의 타 설비(전기 전열설비)의 배선에 대한 전선관을 PVC 재질로 노출하여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모든 설비의 배선은 누전차단기를 통해서 회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방시설 외의 일반설비에 대한 전선관을 화재안전기준의 내화전선, 내열전선 시공방법에 의거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재보험요율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화재보험 요율은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따라 적용됩니다. 건물의 구조에 따른 분류는 건물의 주요구조부 부재에 따라 1급, 2급, 3급, 4급 건물로 구분됩니다. 건물의 용도에 따른 분류는 건물단위로 직업종별을 판단하여 적용하며, 동일 건물 내에 요율수준이 다른 직업종별이 병존하는 경우 그 중 높은 요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이 경우 방화구획에 의하여 둘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각을 하나의 건물로 하여 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화재보험요율은 건물의 직업종별(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분류되는 것이며, 내부에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